

제356회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6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정치개혁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만 정치개혁소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우선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발언을 듣기 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우리 특위 소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명칭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당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년 12월 29일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1500만 원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과 관련하여 함

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정당법 개정안이,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가 되어서 정치개혁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소위원장님, 그동안에 간사 간 협의를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김관영 위원 경과보고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김재경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면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큰 줄기만 경과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김관영 위원 예, 소위를 한 번 열고 그 뒤로 간사들 간에 수차례 회동을 해서 이견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가 보고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 있게, 또 의원정수에 관해서 나름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 나가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간사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소위를 열고 또 전체회의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 간사들 간에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손을 들며)

간사……

○위원장 김재경 (고개를 끄덕임)

○이인영 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본래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려고 했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치개혁소위원회와 또 간사들 간에 좀 더 협의 조정해서 전체회의가 다시 소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회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논의의 진전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모여서 의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오늘 본회의가 2시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하면 되겠네.

김종민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김종민 위원 그때까지 잘 좀 합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나한테 할 게 아니고 저 간사 세 분이 좀 해야……

그러면 일단 정회하기 전에, 윤 간사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간사님들은 간사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소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셔서, 시간은 이따가 소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도 조정되어야 되지만 확정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각 당에서 갖고 있는 안들을, 그냥 합의되어도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주 간사님.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헌정특위가 구성되고 정개소위와 개헌소위로 또 소위를 구성했고 또 정개소위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보고받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2월 7일 오후에 개최되는 본회의장에서 시·도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또 어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님과의 정례 회동에서도 2월 7일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들에게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개소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그 이후에 간사들 간에 하루 3회까지도 하는, 그리고 또 전화 통화로도 합의를 도출하고자 많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어쨌든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원래 했던 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더욱 촘촘하고 세세한 그런 간사 간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두 분 말씀을 듣고 이인영 간사님의 제의에 따라서 아마 정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아마 세 분 간사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시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척 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간사 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7일 날 어쨌든 본회의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애당초에 우리 위원회가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제 원내대표단에서 그걸 한 번 더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회를 했다가 속개 시간은, 아까 윤 간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속개를 1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다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김 관 영	김 상 희	金 成 泰	김 재 경
김 종 민	김 진 태	나 경 원	박 병 석
박 주 민	심 상 정	안 상 수	윤 관 석
이 인 영	이 중 구	정 중 섭	정 춘 숙
정 태 욱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최인호 황영철

○청가 위원(1인)

박완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한	공	식
전문위원	정	연	호
전문위원	정	성	희
입법심의회관	장	지	원
입법심의회관	최	선	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채이배·권은희·김경진·김삼화·김성수·신용현·심기준·오세정·이동섭·이태규·조경태·하태경·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재정·이춘석·백혜련·윤호중·남인순·오영훈·이용득·기동민·박남춘·정재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8. 1. 30. 이정미·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송옥주·추혜선·김경협·정성호·김중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